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문 의 : 경실련 서회원 팀장(02-3673-2141, hwseo@ccej.or.kr)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02-723-5302, tsc@pspd.org)

제 목 : [보도자료]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총 26매)

보도일자 : 2023.08.22.(화)(엠바고 10시 반) | 배포일자 : 2023.08.22.(화)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서회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 국회법에 따른 등록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 전수조사 촉구 주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 기자회견문 낭독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 질의/응답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 5월 25일(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3.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들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을 하도록 하다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4.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미뤄왔고, 최근에는 조사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밝혀내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5. 이에 [재정넷]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등록에서 드러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여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둘째, 법안심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전수조사의 결과로서,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6.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및 배경

-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이 상당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보유 등과 관련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됨. 국회는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가상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관련 거래내역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이하 ‘가상자산의 등록’).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으로 등록대상을 제한하여 진행되었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이 없다보니 성실한 등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등록된 정보에 대한 진위 등 결과를 신뢰할 기본적인 검증도 어려움.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중요한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음.
- 가상자산의 등록을 살펴보면, 김남국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또는 거래한 사실관계가 드러남. 하지만 이마저도 이들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음. 가상자산의 등록은 오히려 더 넓은 범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은 충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음.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위험을 해소하기보다 당장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며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도리어 관련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의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고자 했고 이에 더해, 전수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 이에 **[재정넷]**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함. **[재정넷]은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함.**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함.

2.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 논의

1) 조사 취지

-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이 기존 제도에서

공개 및 관리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이해충돌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함. 관련하여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함.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치이며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움.

-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정황이 확인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었던 가상자산 보유와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관련한 이해충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과 주변이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등도 검증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 현황을 조사해 발표함.

2) 자금세탁방지 역행 법안(특금법) 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3개 개정안):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인 주요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참고: [자료1]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안 목록).
- 조사 결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총 26명임. 3건 발의가 1명(조명희), 2건 발의가 7명(강민국, 김용판, 성일종, 양금희, 윤창현, 이영, 하영제 등), 1건 발의가 18명 등임(참고: [자료2]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자).

[표1] 자금세탁방지 역행 법안 발의자 명단(2건 이상)

이름	정당	건수	대표발의	공동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3	1	2
강민국	국민의힘	2	0	2
김용판	국민의힘	2	0	2
성일종	국민의힘	2	0	2
양금희	국민의힘	2	0	2
윤창현	국민의힘	2	1	1
이영	국민의힘	2	1	1
하영제	국민의힘	2	0	2

- 한편, 서일준 의원, 이주환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을 완화하거나, 신고 기간을 유예해줘야한다는 발언을 하였음(참고: [자료3] 가상자산 관련 발언).

[표2] 가상자산 사업자 특혜 발언

이름	정당	발언 전체 1)	신고 편의	회의
서일준	국민의힘	12	1	제382회-기획재정제6차(2020년11월3일)
이주환	국민의힘	12	1	제388회 - 제4차(2021년6월23일)

1) 빅힐 애널리틱스에서 “가상자산”,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3개 키워드를 넣었을 때 발언 개수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발의

- 「소득세법」(11개 개정안):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참고: [자료1] 가상 자산 사업자 관련 법안 목록).
- 조사 결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총 85명임. 4건이 2명(김용판, 조명희), 3건이 6명(박대수, 박성준, 유경준, 이주환, 추경호, 황보승희), 2건이 18명(강대식, 김성원, 김태호, 노웅래, 민병덕, 박수영, 백종현, 서영석, 성일종, 윤창현, 이원욱, 이종배, 이채익, 임종성, 정우택, 태영호, 홍문표, 홍정민), 1건이 59명임(참고: [자료2]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자).

[표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발의자 명단(2건 이상)

이름	정당	건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4	0	4
조명희	국민의힘	4	2	2
박대수	국민의힘	3	0	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3	0	3
유경준	국민의힘	3	2	1
이주환	국민의힘	3	0	3
추경호	국민의힘	3	0	3
황보승희	국민의힘	3	0	3
강대식	국민의힘	2	0	2
김성원	국민의힘	2	1	1
김태호	국민의힘	2	0	2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2	2	0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2	0	2
박수영	국민의힘	2	0	2
백종현	국민의힘	2	0	2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2	0	2
성일종	국민의힘	2	0	2
윤창현	국민의힘	2	1	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2	0	2
이종배	국민의힘	2	0	2
이채익	국민의힘	2	0	2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	0	2
정우택	국민의힘	2	0	2

태영호	국민의힘	2	0	2
홍문표	국민의힘	2	0	2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2	0	2

- 한편, 유경준 의원, 박형수 의원, 추경호 의원,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일준 의원, 오기형 의원, 김기현 의원, 류성걸 의원, 신영대 의원, 양향자 의원 등이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됨(참고: [자료3] 가상자산 관련 발언).

[표4]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발언

이름	정당	발언 전체 1)	과세유예	회의
유경준	국민의힘	40	5	2021년도국감-기획재정(2021년10월6일) 제391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1년11월22일) 제391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1년11월24일)
박형수	국민의힘	24	4	2020년도국감-기획재정(2020년10월8일) 2020년도국감-기획재정(2020년10월12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 국민의힘	5	3	제391회-기획재정제2차(2021년11월8일) 제396회-기획재정제1차(2022년5월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6	3	2021년도국감-기획재정(2021년10월6일) 2021년도국감-기획재정(2021년10월8일)
서일준	국민의힘	12	2	2020년도국감-기획재정(2020년10월8일) 제382회-기획재정제6차(2020년11월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37	2	2021년도국감-정무(2021년10월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4	1	제388회 - 제4차(2021년6월23일) 제391회-정무소위제3차(2021년11월23일)
김기현	국민의힘	1	1	제388회 - 제2차(2021년6월17일)
류성걸	국민의힘	12	1	제391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1년11월1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11	1	제391회-예산결산특별제8차(2021년11월9일)
양향자	무소속	9	1	제391회-기획재정제4차(2021년11월30일)

1) 빅힐 애널리틱스에서 “가상자산”,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3개 키워드를 넣었을 때 발언 개수

3.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쟁점 등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될 정도로, 국회의원 다수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법안을 발의함. 지금에서라도 가상자산의 보유 또는 거래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해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함.
- 우선, 이해충돌을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는 안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표결과 발언 등을 상정됨.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 의무를 부과함.
-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관리·검증하는 범위는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괄함.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본인 또

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국법 제32조의4).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함.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본인, 가족의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국회법 제32조의5).

- 셋째,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 상 이해충돌은 국회의원 본인이 보유 또는 거래한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를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함.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충돌이 검증되어야 함.

4. 사례

- 가상자산의 등록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거래내역이 비공개되거나, 공개된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된 당사자의 해명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음. 보다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요구됨. 다만, 기 공개된 자료를 통해, 향후 조사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국회공보(국회공보 2023-127(1)호)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전 통일부 장관. 이하 직함 생략), 김정재, 유경준, 이양수, 이종성(이상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이상 3명),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무소속 국회의원로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함. 이들 중 다수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인 투자’이며 이해충돌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함.
- 이들 사례를 통해 향후 전수조사의 방향 등을 확인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권영세 의원, 김홍걸 의원의 경우, 적지 않은 양의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으나 관련 투자금의 출처, 수익 여부와 그 처리 등은 확인할 수 없음. 한편, 유경준 의원, 황보승희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당내 위원회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함.

1) 권영세 의원

- 권영세 의원(전 통일부 장관)은 3,000~4,000만원 정도를 원금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취지로 언론 등에 해명함. 국회공보 상 거래내역(아래 그림에서는 ‘가상자산 변동내역’)은 드러나지 않음. 언론에서는 장관 취임 전에 모두 팔았다가 장관 취임 후 다시 샀으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두 팔았다고 해명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거래액, 거래횟수 등이 적지 않음. 현재 공개되지 않은 거래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표5] 권영세 의원의 등록내역(국회공보 2023-127(1)호)

성명	권영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록사항 없음	
가상자산 변동내역	등록사항 있음	

2) 김홍걸 의원

- 김홍걸 의원은 임기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그 내역은 공보 상 공개되지 않음. 언론에는 2013년 3월 이후, 2억6 천만원을 금액을 투자했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함. 김홍걸 의원은 제21 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감. 김홍걸 의원 또한, 거래액 등이 적지 않은 가운데, 거래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현재 공개되지 않은 거래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표6] 김홍걸 의원의 등록내역(국회공보 2023-127(1)호)

성명		김 홍 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록사항 있음					
가상자산 변동내역				등록사항 있음					
▶ 가상자산 소유 현황									
번호	가상자산 서비스명	가상자산 종류		임기개시일 제고		2023년 5월 31일 제고		비고	
		명칭	십분	수량	가액	수량	가액		
1	코인원	힙스	HIBS	0	₩0	0.0000805	0.00001420825		
2	빗썸	빗썸 마일리지	BM	0	₩0	14,994	₩0		
3	빗썸	비트코인	BTC	0	₩0	2.0168	₩73,026,311		
4	빗썸	엔터버튼	ENTC	0	₩0	3.5145	₩13,286	0단위 이하 절사	

3) 유경준 의원

- 유경준 의원은 언론에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0만 원 정도 사 봤’다는 취지로 해명함.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내역, 언론에서 확인되는 해명에 포함된 비트코인의 보유 또는 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제21대 국회의 전반기에는 기획재정부위원회,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2021년 6월부터는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의안번호: 2110127, 2114962, 2115852, 2111949)를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함.

[표7] 유경준 의원의 등록내역(국회공보 2023-127(1)호)

성명		유 경 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록사항 있음					
가상자산 변동내역				등록사항 있음					
▶ 가상자산 소유 현황									
번호	가상자산 서비스명	가상자산 종류		임기개시일 제고		2023년 5월 31일 제고		비고	
		명칭	십분	수량	가액	수량	가액		
1	업비트	이더리움	ETH	-	-	1.16767291	₩2,923,853		
2	업비트	이더리움피오더블유	ETHW	-	-	1.16767291	-	비상장 코인	
3	업비트	이더리움페이퍼	ETHF	-	-	1.16767291	-	비상장 코인	

4) 황보승희 의원

- 소유현황과 변동내역 모두 공보 상 공개됨. 임기개시일 시점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언론에 ‘예전에 8백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많이 손해를 봤다. 비트코인 등 큰 코인 위주로 했고, P2E 등에 대해선 잘 몰랐다’ 라고 취지로 해명함.
- 황보승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감. 황보승희 의원은 2022년 4월, 한국핀테크학회와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정책포럼을 주최함(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 2022년 7월,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자산 사회적 활성화 전략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함. 해당 시상식에서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정책분야 최고공로상을 수상함.

[표8] 황보승희 의원의 등록내역 중 일부
(국회공보 2023-127(1)호. 지면 상 일부 내용만 캡처)

성명		황 보 승 희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록사항 있음				
가상자산 변동내역				등록사항 있음				
▶ 가상자산 소유 현황								
번호	가상자산 서비스명	가상자산 종류		임기개시일 재고		2023년 5월 31일 재고		비고
		명칭	심볼	수량	가액	수량	가액	
1	빗썸	비트코인	BTC	0		0.0303	₩1,107,261	
2	빗썸	이오스	EOS	0		26.8550	₩32,247	
3	빗썸	에이다	ADA	0		31.1665	₩15,651	
4	빗썸	세타토큰	THETA	0		0.0452	₩52	
5	빗썸	원루트네트워크	RNT	0		35.3362	₩0	거래 종료

분류	완료일자	디지털 자산변동 (잔액)	통화 자산변동 (잔액)	채결가 (KRW)	TXID	지갑주소
AQUA에어드랍 (완료)	2023-05-22 11.14.21	+ 0.0907 AQUA 1.2638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3-04-20 11.08.45	+ 0.0907 AQUA 1.1791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3-03-20 11.15.24	+ 0.0907 AQUA 1.0884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3-02-20 11.11.38	+ 0.0907 AQUA 0.9977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3-01-20 11.12.22	+ 0.0907 AQUA 0.907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12-20 11.15.37	+ 0.0907 AQUA 0.8163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11-21 11.39.58	+ 0.0907 AQUA 0.7256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10-20 12.10.27	+ 0.0907 AQUA 0.6349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09-20 11.11.42	+ 0.0907 AQUA 0.5442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08-22 15.16.16	+ 0.0907 AQUA 0.4535	0 KRW	2,185.67	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07-20 15.43.17	+ 0.0907 AQUA 0.3628	0 KRW	2,185.67	0 KRW	
BTC/KRW 구매완료	2022-06-26 0.38.49	+ 0.0022 BTC 0.9893	-60,746.09 KRW	27,543,000 KRW		
AQUA에어드랍 (완료)	2022-06-20 17.16.16	+ 0.0907 AQUA 0.2721	0 KRW	62,931.71	0 KRW	
BURGER/KRW 구매완료	2022-06-20 11.07.38	+ 77.9639 BURGER 8.6427	57,619.04351 KRW	740.9 KRW		

5. 재정넷의 요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조건없이 즉각 수용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재정넷]은 아래와 같이 요구함.

- 첫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해야 함.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공개제도, <국회법> 상 사적이해관계등록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보좌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고려되어야 함.
 -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관련한 이해충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과 주변이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등 또한 확인되어야 함.
- 둘째,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검증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조사 중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2021년,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 등 서면자료를 조사함.
 - 의혹이 제기된 시발점이면서 드러난 사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를 검증받은 바 없음. 2021년 진행된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사례를 고려해보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에 나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제4호, 시행령 제18조).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4항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해충돌과 이들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사권을 발동하여 가상자산 보유현황, 거래내역, 이해충돌 여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보유현황의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보유 또는 거래로 인한 이해충돌은 없는지 검증에 나서야 함. 조사결과,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면 수사의뢰해야 함.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 기관별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해당 규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형태로 국가기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음.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한 점검은 이미 개별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음.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를 위한 설계가 필요함.

기자회견문

배우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수용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드러나고 비난이 일자, 너나 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며 무력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지켜주려는 듯, 모두 조사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려 하고 아직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경과를 되짚어보고 시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는 없는 일이 되었는지, 연기된 이후, 소식이 없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기존 제도에서 공개 관리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살펴보니,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고 관련 과세를 유예하는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지 않은 입법 또한 확인된다.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지만 거대양당은 마치 김남국 의원 한명의 일탈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은 모두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는 이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려고 나섰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면피용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재정넷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조건없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재정넷은 철저하고 엄격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참고: [자료1]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안 목록

제안일자 /의결일자	법률안 제목	법률안 내용	분류
2020-07-30/ 2021-12-09	[2102538] 특금법 (홍성국의원 등 15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근거 확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강화 (통과)
2021-08-04	[2111912] 특금법 (조명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의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 삭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 연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
2021-08-06	[2111949] 특금법 (윤창현의원 등 12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 허용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 개설 가능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	
2021-08-19 /2023-06-30(대안반영폐기)	[2112119]특금법 (이영의원 등 11인)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	
2020-07-08 /2020-12-02 (대안반영폐기)	[2101676]소득세법 (양경숙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가상자산 과세 부과
2020-12-01 /2020-12-02 (원안가결)	[2105944] 소득세법 (대안)기획재정부위원장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합리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 과세 부과 (통과)
2021-05-12 /2021-12-02 (대안반영폐기)	[2110077] 소득세법 (윤창현의원 등 10인)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연장 가능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1-05-14 /2021-12-02 (대안반영폐기)	[2110127] 소득세법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	
2021-07-06 /2021-12-02 (대안반영폐기)	[2111370] 소득세법 (노웅래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	
2021-10-13 /2021-12-02 (대안반영폐기)	[2112832] 소득세법 (조명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	
2021-12-01	[2113614]소득세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2021-12-02 (원안가결)	(대안)기획재정위원장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유예 법안(통과)
2022-01-20	[2114492] 소득세법 (윤후덕의원 등 15인)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공제
2022-01-26	[2114573]소득세법 (노웅래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	
2022-03-24	[2114962] 소득세법 (조명희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함.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	
2022-06-09 /2023-04-07 (수정안반영폐기)	[2115852] 소득세법 (유경준의원 등 11인)	현행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2022-06-10	[2115876] 소득세법 (김태년의원 등 10인)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세율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	
2022-06-15 /2023-04-07 (수정안반영폐기)	[2115952]소득세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 그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	
2022-11-23	[2118410]소득세법 (김성원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	

참고: [자료2]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자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명	정당	대 표 발 의 여부
2111912	특금법	조명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1912	특금법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김용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박덕흠	무소속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서정숙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윤창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이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태영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하영제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12	특금법	황보승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윤창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1949	특금법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김용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양금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유경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이종성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정진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정찬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조명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949	특금법	하영제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이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2119	특금법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김병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양금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조명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지성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최춘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119	특금법	한무경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윤창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0077	소득세법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권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김용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이주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이채익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조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하영제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077	소득세법	홍준표	무소속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유경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0127	소득세법	강기운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김용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김희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신원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윤희숙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이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0127	소득세법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111370	소득세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김운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1370	소득세법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조명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2832	소득세법	김병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김용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박대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유의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윤창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최승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홍문표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2832	소득세법	황보승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114492	소득세법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492	소득세법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노응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114573	소득세법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김홍걸	무소속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573	소득세법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조명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4962	소득세법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김태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박대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유경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이주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홍문표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4962	소득세법	황보승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유경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5852	소득세법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노용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박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이채익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정우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조명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태영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52	소득세법	황보승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115876	소득세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김병욱(더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876	소득세법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5952	소득세법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김영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배현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양금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윤영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정우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5952	소득세법	조명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2118410	소득세법	김용판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김희곤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박대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이주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최영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2118410	소득세법	태영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참고: [자료3] 가상자산 관련 발언

이름	정당	회의록정보	발언
추경호	국민의힘	제396회-기획재정제1차(2022년5월2일)	큰 틀에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관련해서 현재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현재 법제 정비, 법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제396회-기획재정제1차(2022년5월2일)	기본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장치, 이익과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비가 되고 시장상황이 성숙하면 그때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금투세가 움직이면, 결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이것도 역시 2년 유예하면서 같은 틀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양향자	무소속	제391회-기획재정제4차(2021년11월30일)	부총리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가 거의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손익 계산에 따른 과세 합리화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 그것은 일반적 투자자로부터의 과세 저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말씀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진행을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에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이런 정성적 분석자료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과세 시기를 유예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뭔가 설명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023년도 1월 1일부터라도 하려면 ‘국회에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려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리스트 업을 하고 이게 해결이 어디까지 뻤는지, 정말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와 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제391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1년11월24일)	한 1년 연구해서 좀 향상된 버전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가상자산도 똑같이 한 1년 정도 더 연구해 가지고 완벽한 조세 시스템을 만든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도 좀 더 완성된 과세 시스템을 1년 동안 정비해서 똑같이 과세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제391회-기획재정소위제5차(2021년11월24일)	이것 저도 작년에 가상화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찬성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반대 입법을 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정부가 과세 시스템이나 인프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을 신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올해 들어서 보니까 가상자산이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거래소 간의 거래나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의 거래 그리고 4대 거래소 외에 코인만 가지고 하는 거래소의 문제 그리고 NFT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트래블 룰을 지금 국제적으로도 공

			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준비가 덜돼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 가지고 금투세도, 증권에 대한 거래도 2023년부터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과세 준비나 과세 시스템 정비를 해서 또 반대로 이야기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부가 보호할 수 있을 때 세금을 받는 건데 원래 자금세탁이나 국제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과세 시스템이나 과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방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한테만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결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1년 정도 금투법 시행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년 유예 법안을 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1년 정도 내고 해서 금투법 시행과 함께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감-기획재정(2021년10월8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3개월 정도 후부터 과세를 진행하는 상황이 있고 또 준비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국세청 내에서도 3000명 정도의 그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유하고 있고 거래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산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 4개로 좁혀져 가지고 거래소 의무조항으로 신고하게 돼서 그에 따른 2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효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세 대상자들의 과세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파악과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한 세수추계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유경준	국민의힘	제391회-기획재정소위 제4차(2021년 11월 22일)	이것 지금 특금법도 아직 과세유예나 이런 것이 진행 중이고 가상자산의 성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도 안 돼 있고 가상자산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입법해도 징수가 불가능한 법을 입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확정되고구체적이고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 먹은 시점에서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압류할 수가 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유경준	국민의힘	제391회-기획재정소위 제4차(2021년 11월 22일)	규정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것 같은데가상자산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굳이 입법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참고로만 하세요.
류성걸	국민의힘	제391회-기획재정소위 제1차(2021년 11월 15일)	차관님,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에 처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고 많이 했는데 정작 과세하기 1년 전에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조문들을…… 물론 그게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또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됐다 아니면 제도가 아직 정치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보면 법이라는 게 시행하기 전에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따라 마음의 준비도 하고

			<p>또 관련되는 시스템도 새로 점검을 하고 또 설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내용을 국세청장의 요청 없이도…… 법문을 보면 전부 다 국세청장의 요청이라고 해 봤다가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말이지요. 그것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관련돼서 물론 나중에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 중의 하나가 만약에 가상자산은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 시작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2023년 5월 달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이런 형태라는 게 법의 미비라든지 제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작년에 진짜 정치하게 했어야 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정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p>
추경호	국민의힘	제391회-기획재정제2차(2021년 11월8일)	<p>부총리 수고하십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과세되는 것을 좀 유예해서 최소한 2년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부총리 입장은 조금 전에 잘 들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법안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제출이 돼 있을 텐데 소위 때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소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p>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제391회-예산결산특별제8차(2021년 11월9일)	<p>제가 국회에 당선돼서 재산신고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소액으로 가상자산을 코인을 사 놓은 게 있는데 한 1000만 원이 좀 넘어섰더라고요. 신고를 하려고 하니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타소득이라고 쓰고 한 1200만 원인가 신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 인정이 없이 투자자 보호도 없는 무리한 과세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p>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감-기획재정(2021년 10월6일)	<p>얘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미국, 독일, 호주는 그에 따라서 똑같이 비슷하게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제 기준을 250만 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주식 관련한 부분들은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면서 실제로 소액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 인구는 사실은 570만에서 600만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가상자산의 거래 금액이 코스피 거래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올해 상반기의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과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불평등이 없게끔 과세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제금액도 250만 원과 5000만 원의 차이, 그리고 5년간의 이월 공제에 대해서도 주식은 인정하고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호주의</p>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을, 2000만 원까지 해서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 미국 이런 데는 4000만 원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대책을 가지고 하고요. 넘겨 주세요. 일례로 1억 원을 가지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세율을 하면 19.5%의 세부담이 되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든지 실제 그 시장에 뛰어들어온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정비하고. 주식 거래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관한 기타소득 문제를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과 시기, 이월 공제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감-기획재정(2021년10월6일)	그래서 가상자산에 관한 모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근거법에 규정을 한 다음에 과세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경준	국민의힘	2021년도 국감-기획재정(2021년10월6일)	아니, 그것은 국세청 담당인데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4월에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용역만 발주한 상태고 12월에야 저 표에 있는 것처럼 겨우 완성을 한다 그러는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 과세 시스템도 결국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국세청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안 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래소들은 거래정보 제공 시 어떤 법을 준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특금법 하나만 달랑 있지만 가상자산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세를 하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외하고 어떤 공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고 해외거래소에서 그 외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법이 실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뒤에 과세한다는데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국내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냐 질문을 해 봤더니 OECD 주요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도 거래내역에 대해서 주요국의 협조가 있어야, 가상자산에 꼬리표가 붙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국가마다 전혀 공조가 안 된 상태여서 국내.해외 거래소 사용자 간의 과세 형평성에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시스템 구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3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감-정무(2021년10월1일)	그런데 가상자산은 이제 출발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과세 카드부터 먼저 꺼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한번 보세요, 전체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감-정무(2021년10월1일)	그러니까 제말씀은 관련된 법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자산으로 규정할까 개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합의도 안 되어 있는데 왜 과세부터 하느냐 이것이지요.관련법 만들고 이게 금융자산인지 기

		월1일)	타자산인지도 제대로 논의하고, 그리고 담세자들의 동의도 좀 얻어 나가는 그런 것도 밟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우리 산업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 논의도 하고 그 결과 속에서 과세가 나오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논의는 다 생략한 채 세금부터 내라 이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 이것이지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제388회 - 제4차(2021년6월23일)	저희 당에서도 가상자산특위를 올해 발족을 해서 오늘 이야기 시작을 했습니다만기왕에 논의하는 김에 특금법에 대한 등록 이후의 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약간 제도적 보완을 하는 논의가 있으니까 그걸 일정 기간 정도까지 더 논의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과세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없나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이주환	국민의힘	제388회 - 제4차(2021년6월23일)	경찰청은 두 번째 문제고 사후의 문제고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이런 부실 잡코인들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고 또 잡코인을 정리하면 투자자들이 이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볼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제388회 - 제2차(2021년6월17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 남 탓을 하면서, 그런데 정책은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담니다.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우선적으로 거짓말 잘하는지 속이자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은 1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열풍부는 가상화폐 한번 들여다봅시다. 투자자 중에서 2030세대가 무려 6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산 축적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직장 불안하지요, 직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 청년들이 고위험의 투자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닙니까? 절망의 절벽에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코인 투자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현실을 본 정부가 당장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보호장치에 대한 책무를 무시한 상태로 이익 남겼다고 거기에 과세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과세 유예해야 마땅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2020년도 국감-기획재정(2020년10월12일)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지금 119조 12호 타목을 가지고 과세 근거라고 국세청이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마는 거기는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사 해외에서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상 자산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 규정을 넣기도 전에 이미 국세청이 자산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무리한 확장 해석을 통해서 과세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법률 11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

			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더욱 과세의 근거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세 전에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법령 해석 질의를 했었지요. 그것은 확인했습니까?
박형수	국민의 힘	2020년도 국감-기획재정(2020년 10월 12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803억 원의 세금을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업체가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납부된 것이 잘못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소송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4~5년 정도로 계산을 해 보면 환급가산금만 해도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빗썸은 803억 원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다른 업체, 재무구조가 부실한 업체에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했다라면 그 기업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박형수	국민의 힘	2020년도 국감-기획재정(2020년 10월 12일)	청장님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엄정하게가 아니라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무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정하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과세가 진행되니까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 원칙 중에 조사 비례의 원칙이 있지요? 세무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 최소한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 근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데 실적이든 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든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라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그런 과세처분 때문에 고액소송에서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업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과세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의신청하면 거기에서 적당하게 깎아 주고 조정해 주는 이런 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업무 풍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신중하지 못한 과세 때문에 생긴 문제가 제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한 803억 원 과세처분입니다. 지금 이 803억 원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내용을 아시지요?
서일준	국민의 힘	제382회-기획재정 제6차(2020년 11월 3일)	이 과세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특금법인데요. 이 특금법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아니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아우성이 매우 큼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 아우성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서일준	국민의 힘	제382회-기획재정 제6차(2020년 11월 3일)	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아우성입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실명 계좌가 확보되어 있고 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23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특금법상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과세협력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 시기와 형평성을 맞춰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023년 초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수	국민의 힘	2020년도 국감-기획재정(2020년10월8일)	그리고 올해 기재부에서 또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행법에는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과세소득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성을 인정하고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다가 27호를 추가해서 가상소득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간에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은 올해 10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야지 내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 법률이 실효성이 있게 돼요.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빗썸에 부과한, 그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한 것이 됩니다. 이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일준	국민의 힘	2020년도 국감-기획재정(2020년10월8일)	부총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답변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2018년부터 검토해 왔다고 자랑스럽게 방금 부총리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공청회 하나 거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좀 너무 성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을 통해서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거래를 투기나 도박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4] 가상자산의 등록 상 국회의원 보유, 거래내역 현황

아래 표에서 ‘?’ 는 공보 상 확인되지 않는 정보임

의원 명	소유 현황			변동 현황			
	내역	임기개시일 기준 보유 가상자산 종류/보유액	2023.5.31일 기준 보유 가상자산 종류/보유액	내역	거래횟수		
권영세	등록사항 없음	없음	?	?	등록사항 있음	없음	?
김남국	등록사항 있음	있음	17종/149208034.332458	50종/698460287.556712	등록사항 있음	없음	?
김상희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	2종/67	등록사항 있음	있음	12회
김정재	등록사항 없음	없음	?	?	등록사항 있음	없음	?
김홍걸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	4종/73039597.0000142	등록사항 있음	없음	?
유경준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	3종/2923853	등록사항 있음	없음	?
이양수	등록사항 있음	있음	8종/21200356	12종/25529	등록사항 있음	없음	?
이종성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	2종/0	등록사항 있음	없음	?
전용기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	2종/31452	등록사항 있음	있음	16회
조정훈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원	1종/468273	등록사항 있음	있음	1회
황보승희	등록사항 있음	있음	0종/0원	25종/1398097	등록사항 있음	있음	238회